##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415

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김병주·조계원·윤후덕

부승찬 • 박지원 • 강준현

안규백 • 이병진 • 민홍철

허 영•박선원•추미애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4년 12월 3일,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·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·출입을 통제하고,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.

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·서울경찰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데,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, 국회 직원의 진·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·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.

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 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(안 제2조제8호 개정).

법률 제 호

##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국회의 청사관리 · 경호 · 경비 및 후생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직무) 국회사무처(이하"사	제2조(직무)
무처"라 한다)는 의장의 지휘	
· 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	
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	
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	
사무를 처리한다.	<u>.</u>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국회의 청사관리ㆍ경비 및	8. 국회의 청사관리・경호・경
<u>후생</u>	<u>비 및 후생</u>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